

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관련 사항 안내

- 명 청 : 자격유지검사, 의료적성검사(1가지 선택)
- 목 적 :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적격 여부 판단
- 대 상 :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
- 검사 주기

구 분	운송사업자(운수종사자)
만 65세 이상 70세미만	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마다
만 70세 이상	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마다

○ 검사 기한

-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 수검 → 최초검사 이후 검사주기는 “계속검사”에 따름
- 조합가입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: 면허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
조합가입 이후 만 65세 이상된 자 :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

○ 계속검사 수검시기

계속 검사 (수검일 기준)	○ 65세~69세 :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,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-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,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
	○ 70세 이상 :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-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

* 만 70세가 도래된 시점(생년월일)에 이전 검사일로부터 ~

- ▶ 1년 이상인 경우에는 ➔ 「생년월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」
- ▶ 1년이 안된 경우에는 ➔ 「이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」

○ 검사 방법

- 접수방법 :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 신청(방문접수 불가)
- 전화접수 : 월 ~ 금요일 / 09:00 ~ 18:00(토·공휴일 제외)

▶ 『공단』 자격유지검사

검사구성	시야각, 신호등, 화살표, 도로찾기, 표지판, 추적, 복합기능검사 7종 (각 항목마다 등급이 매겨지며, 5등급이 2개 이상 나오면 부적격자로 판정 탈락)
검사방법	검사예약 → 검사접수 → 검사시행 → 교정교육 → 판정표교부
검사판정	적합 ● 부적합 판정(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)
검사시간	약 2시간 정도
검사예약	홈페이지(www.kotsa.or.kr) “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력” 또는 콜센터(1577-0990) 예약
검사준비물	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) 및 검사비용 20,000원
검사장소	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인천검사장(한국교원공제회관 3층) ▶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(간석동) ☎ 032)579-5007

▶ 『병원』 의료적성검사

검사구성	현 병력, 신체계측, 혈압, 혈당, 시기능, 인지기능, 운동 및 신체기능검사
검사방법	의료검사 → 의료적성검사서 발급 및 공단제출
검사판정	적합 ● 부적합 판정(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)
검사시간	약 1시간 정도
검사예약	의료적성검사기관(병원)방문접수 또는 콜센터 예약 032)240-8005~8007
검사비용	60,000원
검사장소	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본관 3층 일반검진센터 ▶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

- ▶ 수검 후 운전적성정밀(자격유지/의료적성)검사 종합판정표 1부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나머지 1부는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부적합판정 시 같은 검사로는 14일 이후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종류의 검사를 예약하여 바로 수검 가능합니다.
- ▶ 병원 의료적성검사 후 운전적성정밀(의료적성)신청서, 신분증사본,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등을 즉시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→ 수검판정표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결과가 나올 때 가지는 택시운행 가능
- ▶ 부적합판정 시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택시운행 미 자격자가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○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- 미 수검 및 수검부적합판정 후 운행을 지속할 경우

처분대상자	위반내용	처분내용
운송사업자	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	과징금 360만원
운수종사자	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기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	과태료 50만원